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태양광 공사 집중점검기간(4.1.~4.30.) 운영,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전파!

- 캠페인 전개 및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날씨가 풀리는 본격적인 봄철에 접어들며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 '26년 지붕·태양광 공사 사망사고 사례

- ▶ (3.5.) 퇴비사 지붕 개보수를 위해 이동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사망 1명)
- ▶ (3.10.)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사전 점검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사망 1명)
- ▶ (3.25.) 공장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하자 점검 중 채광창을 밟고 떨어짐(사망 1명)

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21~'25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수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 중 하나이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붕 개·보수 작업 및 태양광 설치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집중적(약 60%)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공사규모 별로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집중적(약 65%)으로 발생하는 등 대다수 지붕·태양광 공사는 초소규모·초단기 공사, ▲채광창 등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사고가 발생, ▲약 70% 이상이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각별한 안전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추락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여 지방정부·유관 기관 등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대적 현장점검 실시하여 추락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6년부터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방정부·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현장에 사고사례 및 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 * ▲(유관기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협·단체) 전기공사협회, 전문건설협회, 전국한우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또한 지방정부·유관기관으로부터 공사정보를 파악하고, DB화하여 공사시기에 맞춰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팀, 지붕 전담 지킴이(200여명 규모)와 민간기술지도 기관(공사금액 1억 미만 대상)이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기술·재정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유해·위험요인 개선하기 비용을 재정지원 사업*와 연계하여 지원한다.

- * 지붕·태양광 건설현장(공사규모 50억원 미만 또는 10인 미만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덮개 등 비용의 최대 90% 비용 지원

안전보건공단, 지붕 전담 지킴이 등이 기술지원을 할 때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로 통보하고, 지방관서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엄중한 행·사법 조치를 실시한다.

추가로 상반기에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지붕·태양광 공사업체 경영책임자 및 실무자를 우선으로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평가 등의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에서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여 축사주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한다.

- * 전문공사업체 CEO(12시간) 및 실무자(4시간) 대상 체계적 안전보건교육을 지원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부서지기 쉬우므로 작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채광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전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사·공장주는 무관심으로 방치하기보다는 지붕·태양광 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업체와 책임을 함께 하고, 공사업체는 비용보다는 작업자의 안전을 우선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지붕·태양광 공사 주요 안전작업 수칙
 2. 지붕(태양광) 공사 작업 전 필수 점검사항
 3.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내문
 4. 지붕·태양광 공사 관련 기술·재정지원 안내문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건설 산재 예방 감독과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담당자	사무관	김성경	(044-202-8937)
			연구관	민병윤	(044-202-8943)
			주무관	김병석	(044-202-8939)
			주무관	김진수	(044-202-8941)



지붕 · 태양광 공사 **추락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작업자



채광창

<노후화된 채광창>



<밟아서 깨진 채광창>

☞ 채광창은 밟으면 깨집니다!!

<작업자 핵심 안전수칙>

1. 지붕의 **채광창 위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지붕 위의 **채광창**은 **절대 밟지 않습니다!!**
3. 지붕 위에서 이동 및 작업 시에 **안전대를 반드시 체결**합니다.

지붕 · 태양광 공사 **추락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사업주(공사업체)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안전 덮개>



<안전난간>

☞ 지붕 위 안전조치를 실시합니다!!

<사업주 핵심 안전수칙>

1. 작업자에게 **채광창 위치와 채광창을 밟으면 깨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2. 지붕 위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추락방호망, 채광창 안전덮개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합니다.**
3. 작업자가 **안전대**를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지붕 · 태양광 공사 **추락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축사주·공장주



채광창



안전대 부착설비

작업자 안전의 관심을 갖습니다.

<축사주 · 공장주 핵심 안전수칙>

1. 작업자에게 **채광창 위치와 채광창을 밟으면 깨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2. 지붕 위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데 **협조**합니다.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지붕공사 주요 작업안전수칙

- 1 우선 고소작업대 등으로 지붕 아래에서 작업 가능한지 확인
- 2 작업통로를 발판 설치
- 3 채광창 안전닫개 설치
- 4 가장자리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 5 안전모, 안전대 착용
- 6 부착설비에 안전대 걸고 작업
- 7 지붕 위 재재 집중적재 금지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입니다

안전
중요합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면 목숨도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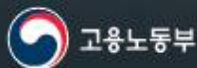
✓ 작업 전 안전점검

✓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 안전모·안전대 지급 및 착용



2019-10-15
* 안전보건공단(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2019 안전보건 포스터
본서 및 일러스트 배포하기
[관련 자료 시·지연물 제공]



지붕공사 작업 전 필수 점검사항

추락

추락

- ✓ 사전에 지붕의 재질이나 채광창 등 추락위험요인을 파악하였는가?
- ✓ 지붕진입을 위한 승강설비*는 설치되어 있는가?
*고정식 사다리, 워킹타워, 고소작업대(차)
- ✓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견고한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 지붕 위에 자재(태양광 모듈 및 지지대)를 집중 또는 과적하지 않았는가?

☐ 적정
☐ 부적정

- ✓ 취약한 지붕재(채광창 등)에 추락방호 조치 (발판, 안전덮개*, 추락방지망, 안전대 착용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는가?
*채광창 위에 설치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밟지 않아야 하나, 이동·작업 중 밟을 경우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설비

☐ 적정
☐ 부적정

- ✓ 지붕 단부에 추락방호조치(안전난간, 추락방지망, 안전대 착용 중 하나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 ✓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 적정
☐ 부적정

장비

- ✓ 작업반경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가?

☐ 적정
☐ 부적정

- ✓ 고소작업대(차) 탑승설비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탑승설비에 안전난간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도 안전대 착용

☐ 적정
☐ 부적정

1. 사업개요

- 공사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은 50억원 미만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공장·축사·창고 등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에 떨어짐 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시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떨어짐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추락방호망, 타워형 안전작업대, 고소작업대, 채광창 안전덮개 등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 후 신청 가능

- (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중 지붕·철골 공사 현장의 사업주

※ 원도급업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하도급업체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

- (공장·축사·창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중 지붕 구조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주

3. 참여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 (지원한도) 건설현장과 공장·축사·창고 사업주*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정함

* 개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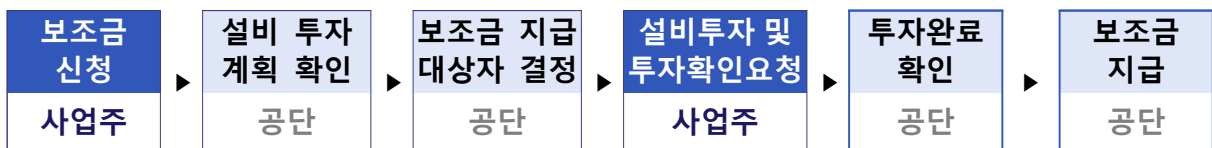
구분	지원한도
건설현장	현장당 최대 3,000만원,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공장·축사·창고 사업장	같은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 (지원횟수) 당해연도 사업장(건설현장)별 1회에 한하여 지원
-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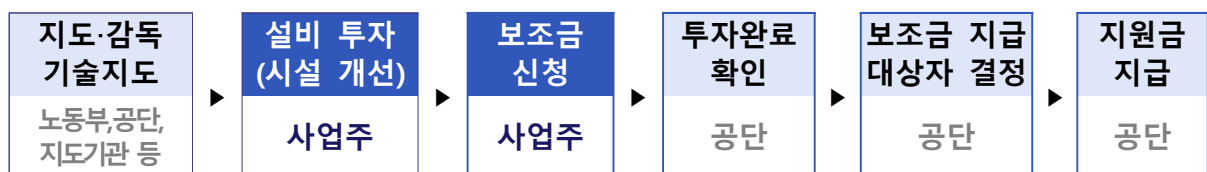
품목	대상설비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 시스템	앵커(시작, 중간, 코너, 엔드 포함), 카리비너, 중간 가이드, 와이어 등 구성품 일체
안전대 부착설비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대, 앵커 스트랩, 빔 앵커(고정용), 빔 앵커(슬라이딩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와이어형), 수평 안전대 부착설비용 지지로프(로프형)
안전방망	추락방호망(고정용 지지로프 등 부속품 일체)
타워형 안전작업대	발판 1열, 2열 및 높이 1단, 2단, 3단 타워형 안전작업대로 구분
고소작업대	작업 최대높이 12m, 16m, 18m 굴절형 고소작업대로 구분

- (지원절차) 사업주가 보조금을 신청한 후 공단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에 따른 설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 고용노동부공단 등 기술지원 시 떨어짐 사고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전 신속지원 가능

- <기본지원절차>



- <신속지원절차>



※ 노동부, 공단, 지도기관 등 기술지도 내용 중 보조금 지원 안내 및 보조금 신청 동의를 한 경우에만 신속지원절차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지급되는 보조금은 공단 투자완료 확인 등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지붕(태양광)공사 기술지원 방안

지붕(태양광) 공사 관련 법령 및 처벌사례

✓ 「안전보건규칙」 제45조 (원칙)

1 지붕 가장자리 안전난간 설치

▶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 안전대 착용을 통한 추락 위험 방지 대체 가능

2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3 폭 30센티미터 이상 발판 설치



✓ 지붕 공사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사례

감독 시 사업주 벌금 50만원·법인 벌금 50만원 ▶ 벌금 총 100만원 부과

중대재해 발생 시 징역,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최대 1,500만원 부과



지붕공사 관련 법령(원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처벌 사례 설명
기술지원 미이행·거부 시 지방관서의 감독받을 수 있음을 안내

지붕(태양광) 공사 관련 기술지원

관리적 사항

산재보험 가입여부, 공사자격 보유여부,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외국인 포함) 여부 등을 확인

✓ 공사자격 확인 사항

지붕공사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 보유(1,500만원 이상)

태양광 공사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 안전교육 확인 사항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특별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안전교육** 이수여부

* ①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 28호 관련)

기술적 사항

지붕공사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규칙」 제45조에 따라 단부 안전난간, 채광창 덮개, 발판 등을 설치할 해야 함

- 다만, 초소규모·초단기간 등 공사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안전조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안내

< 사례 01

축사·공장 신축 또는 지붕 전체 교체



| 지붕 전체 |



| 굴절형 고소작업대 |



| 추락방호망 |



| 안전대 부착 설비 |

기술지원

핵심안전 수칙

- ✓ 지붕 상부로 이동 또는 지붕 하부 작업
고소작업대 사용(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 ✓ 지붕 상부에서 작업(지붕재 설치 전)
추락방호망 설치
- ✓ 지붕 상부에서 작업(추락방호망 미설치 시)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안전대 체결)

재정지원

소요금액
=보조금 + 자부담

소요금액(예)

- ✓ 추락방호망(설치) 460만원
- ✓ 고소작업대(임대) 22만원

※ 설치 면적(㎡) : 540㎡ 기준(예시)

보조금

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 추락방호망 370만원

✓ 고소작업대 18만원

자부담

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 추락방호망 90만원

✓ 고소작업대 4만원

※ 안전대 부착설비는 지원설비 종류에 따라 보조금 및 자부담 상이(세부계획 21p 참고)

< 사례 02

축사·공장 채광창 또는 지붕재 일부 교체(일부만 선택 가능)



| 영구형 안전대 부착설비 |



| 고소작업대 |



| 추락방호망 |



| 채광창 안전덮개 |

영구형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권고, 不可시

기술지원

핵심안전 수칙

- ✓ 지붕 상부로 이동/ 안전대 부착설비
고소작업대 사용(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 ✓ 지붕 상부에서 작업(지붕재 설치 전)
추락방호망 설치
- ✓ 지붕 상부에서 작업(추락방호망 미설치 시)
채광창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

재정지원

소요금액
=보조금 + 자부담

소요금액(예)

- ✓ 추락방호망(설치) 460만원
- ✓ 고소작업대(임대) 22만원

※ 설치 면적(㎡) : 540㎡ 기준(예시)

보조금

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 추락방호망 370만원

✓ 고소작업대 18만원

자부담

추락방호망
+고소작업대

✓ 추락방호망 90만원

✓ 고소작업대 4만원

※ 안전대 부착설비는 지원설비 종류에 따라 보조금 및 자부담 상이(세부계획 21p 참고)

< 사례 03

축사·공장의 채광창 또는 지붕재 일부 교체(택 1)

※ 긴급하게 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1 일반 판넬형 지붕



2 지붕 중간에 합기 지붕이 있는 경우



3 지붕재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예시)이며, 현장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급경형 고소작업대 활용
(고소작업대 사용하여 작업 및 작업이 불가능한 위치는 고소작업대에 안전대 체결하는 방법 등)

기술지원

핵심안전 수칙

- 1 축사 지붕 측면에 16mm 이상 pp로프를 기둥마다 연결한 후 연결된 로프를 다시 pp로프에 연결하여 안전대 부착 설비로 활용
※ 측면 기둥에 로프 연결은 고소작업대 활용, 이 경우 작업자는 로프 반대편에서만 작업 실시
- 2 중간 합기 지붕 기둥마다 16mm 이상 pp로프를 연결하여 안전대 부착설비로 활용
- 3 지붕재 해체한 위치 중도리 부분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16mm 이상 pp로프 연결
※ 안전대 부착설비(빔 포스트 등)는 고소작업대 또는 타워형 작업발판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설치

소요금액(예)

✓ 고소작업대(임대) 22만원 + α(안전대 부착설비 등 부대비용)

재정지원

소요금액
=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고소작업대

✓ 18만원+α

자부담
고소작업대

✓ 4만원+α

※ 안전대 부착설비는 지원설비 종류에 따라 보조금 및 자부담 상이(세부계획 21p 참고)

< 사례 04

축사·공장 단부 공사



| 영구형 안전대 부착설비 |

OR



| 고소작업대 |



| 타워형 안전작업대 |

영구형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권고,不可시

기술지원

핵심안전 수칙

- ✓ 단부, 처마 등 공사 시
고소작업대 사용(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 ✓ 또는 타워형 안전작업대 사용

소요금액(예)

✓ 고소작업대 22만원 ✓ 타워형 안전작업대 870만원

재정지원

소요금액
=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고소작업대
타워형 안전작업대

✓ 고소작업대 18만원

✓ 타워형 안전작업대 695만원

자부담
고소작업대
타워형 안전작업대

✓ 고소작업대 4만원

✓ 타워형 안전작업대 175만원

※ 안전대 부착 설비는 지원설비 종류에 따라 보조금 및 자부담 상이(세부계획 21p 참고)

< 사례 05 >

축사 공장 태양광 설치 공사



| 영구형 안전대 부착설비 |



| 고소작업대 |



| 추락방호망 |



| 단부 안전난간 |

영구형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권고, 불가시

기술지원

핵심안전 수칙

- ✓ 지붕 상부로 이동/ 안전대 부착 설비
고소작업대 사용(작업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안전대 착용)
- ✓ 지붕 상부에서 작업
추락방호망 또는 채광창 덮개 설치
- ✓ 지붕 상부에서 작업
단부 안전난간 설치* ※ 태양광 설치 작업중 단부 추락 다
* 단부 안전난간 설치비용은 재정지원 대상이 아님

소요금액(예)

- ✓ 추락방호망(설치) 460만원
- ✓ 고소작업대(임대) 22만원

※ 설치 면적(㎡) : 540㎡ 기준(예시)

재정지원

소요금액
= 보조금 + 자부담

보조금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대

- ✓ 추락방호망 370만원

- ✓ 고소작업대 18만원

자부담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대

- ✓ 추락방호망 90만원

- ✓ 고소작업대 4만원

※ 안전대 부착 설비는 지원설비 종류에 따라 보조금 및 자부담 상이(예규제화 21 p 참조)

< 그 외 기술지원 사항 >

위험요인 예시

지붕재, 태양광 설비 등
자재 적재가 필요한 공정

채광창, 노후 지붕재
주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가 절대 불가능한 경우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작업

안전조치 예시

- 자재 하중을 고려하여, 지붕 중도리 등 견고한
부재 위에 분산적재하여, 지붕 위 과도한 하중 방지

- 공사 시작 전에 주요 취약부분 파악 하여 스티커 부착, 표지판 설치 등을
설치하여 추락주의 안내
- 취약부분에는 근로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방지

-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안전대 걸이시설로 활용
- 중도리 등 지붕의 견고한 부재에 수평안전대, 지지로프를 설치하여
추락방지

-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안전대 걸이시설로 활용 후 설치 권장
- 채광창, 노후 지붕재 등 취약부분을 확인하고, 중도리 등 지붕의
견고한 부재 위치를 설명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내

※ 사례별 안전조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안전조치 안내必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가이드 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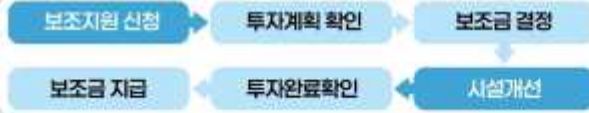


목적

축사·공장·창고 등 지붕 유지·보수 작업 시 떨어짐 사망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건물 사업주가 지붕에 영구형 추락방지시설비를 미리 설치토록 하기 위해 시스템 설치 비용의 최대 90% 지원

- **지원대상** 지붕이 설치된 건축물(축사·공장·창고) 사용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금액** 같은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당해년도 사업장별 1회에 한함, 사업주는 약 10% 부담)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사업 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 **지원절차**

- 사업주
- 공단



공고문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1 지붕 상부 떨어짐 사망사고 유형 최근 3년('22~'24)간 총 94명이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

취약 지붕재(채광창 등) 파손	지붕 단부에서 미끄러짐	지붕 상부로 이동 중 떨어짐
 노후 지붕재를 교체하는 작업 중 밝고 있던 지붕재가 파손되며 추락	 축사 지붕 위 태양광 구조물 설치 중 지붕 처마 단부에서 미끄러지며 추락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철골 지붕 상부로 오르던 중 추락

➡ ① 지붕재 파손, ② 지붕 단부, ③ 지붕 승강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추락방지시스템 적용 필요

2 지붕 사고로 인한 사업주 등 처벌 사례

2022년 8월	2023년 2월	2024년 3월
징역, 집행유예 2년 지붕 절거작업 중 밝고 있던 지붕재가 깨지며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징역, 집행유예 2년 축사 지붕 보수작업 중 밝고 있던 지붕재가 깨지며 5.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징역, 집행유예 2년 축사 지붕 교체작업 중 밝고 있던 지붕재가 깨지며 5m 높이에서 비딴으로 떨어져 사망

➡ 지붕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사망 시 축사·공장 등 소유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지붕 추락방지시스템 구성



지붕 추락방지 시스템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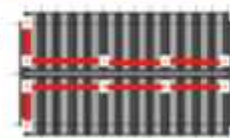
- 영구형 제품으로 지붕에 설치 후 직접 또는 도급 작업 시 해당 작업자가 안전대를 걸고 이동 및 작업이 가능
- 근로자 작업 중 떨어짐 발생 시, 지붕재 파손 최소화

국가 보조금 지원 받으면 최대 약 90%까지 소요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기준 예시

지붕수평투영면적 : 540㎡
(길이: 45m, 너비: 12m)
지붕의 형태 : 경사지붕
안전시설 설치길이 : 100m

설치예시 : 지붕평면도



소요금액: 약 800만원 보조금: 약 700만원(사업주 부담액: 약 100만원)

비용지원사업 공단 대표번호 : 1544-3088

공단 일선기관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기관	관할구역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건설안전팀	02-6711-287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건설안전부	033-815-101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건설안전부	02-6924-875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건설안전부	02-2086-803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안전건설부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부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건설보건부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건설안전부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건설보건부	055-371-7524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건설안전부	062-949-879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김제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건설보건부	063-240-855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건설안전부	061-288-875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건설부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및 부안군·고창군	교육건설부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광양시 및 고흥군·보성군	건설보건부	061-689-4942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건설안전부	053-609-0596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적읍 중리구미국가 산업단지 및 봉곡면·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건설보건부	054-478-801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건설보건부	053-650-685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및 영덕군·울릉군·울진군	건설보건부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건설안전부	032-510-058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건설보건부	031-828-195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안전건설부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건설보건부	032-680-6543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건설안전부	042-620-5625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건설안전부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건설안전부	041-570-3456
충북동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교육건설부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건설안전부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건설안전부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건설안전부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건설안전부	031-690-1953

○ 사업 추가안내자료 확인 위치

공지사항	자료실	지원품목업체 정보 안내
 공고문 및 필수 공지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연간 수시 보조금 품목 및 보조금 변동사항 확인 가능)	 보조금 사업 각종 서식, 지원품목별 제조사 설명자료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조금 지원 품목별 제조·판매 업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특화 | 02

지붕 상부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가이드 **건설업**



목적

소규모 철골 및 지붕 공사 진행 시 떨어짐 사망사고가 다발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3가지 안전조치에 대해 공단이 추락방지시설 비용의 70~80%를 지원

- 지원대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철골·지붕 공사 사업주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 한함)
- 지원금액 현장 당 최대 3,000만원,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사업 신청·조회' →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신청 지원절차

지도·감독 기술지도
노동부, 안전, 노동기반팀

설비투자(시설 개선)

보조금 신청

지원금 지급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투자완료 확인

- 사업주
- 공단



공고문



신청방법



신청하는 곳

1 지붕 하부 추락방호망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예시

설치 환경

건축물 기준 예시

- 지붕수평투영면적: 540㎡
(길이: 45m, 너비: 12m)

설치 기준

- 지붕하부 전면 설치 및 해체



설치방법 예시

소요금액 : 약 460만원

※ 설치면적(㎡) 당 8,500원

보조금 : 약 367만원

자부담 : 약 93만원

2 구조물 외부에서 굴절형 고소작업대 활용(임대) 작업 보조금 지원 예시

설치 환경

구조물 기준

- 지붕수평투영면적: 540㎡
(길이: 45m, 너비: 12m)

준비 기준

- 굴절형 16m 기준(1대, 1일 임대)



설치방법 예시

소요금액 : 약 22만원

※ 1일 임대 기준

보조금 : 약 18만원

자부담 : 약 4만원

※ 고소작업대 지원 품목(차량탑재형 등) 및 보조금이 확대 될 수 있음

3 취약한 지붕 마감재 상부 채광창 안전덮개 설치 보조금 지원 예시

설치 환경

취사 채광창 기준

- 채광창 길이: 20m
- 채광창 너비: 1m 미만

덮개 설치 기준

- 덮개 규격: 1.175 x 0.5(m)
- 설치 개수: 40개



설치방법 예시

소요금액 : 약 452만원

※ 개당 113,000원

보조금 : 약 362만원

자부담 : 약 90만원

비용지원사업 공단 대표번호 : 1544-3088

공단 일선기관별 관할구역 및 연락처



기관	관할구역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동대문구·서초구·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건설안전팀	02-6711-287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경기도 가평군	건설안전부	033-815-101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양천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건설안전부	02-6924-875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강동구·종로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 및 성북구	건설안전부	02-2086-803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평창군	안전건설부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부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건설보건부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건설안전부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건설보건부	055-371-7524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건설안전부	062 949 079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건설보건부	063-240-855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건설안전부	061-288-875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건설부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 및 부안군·고창군	교육건설부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 여수시·순천·광양시 및 고흥군·보성군	건설보건부	061-689-4942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건설안전부	053-609-0596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 석척읍 중리구미국가 산업단지 및 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	건설보건부	054-478-801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척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건설보건부	053-650-685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및 영덕군·울릉군·울진군	건설보건부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건설안전부	032-510-058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건설보건부	031-828-195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안전건설부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건설보건부	032-680-6543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보령시 및 금산·충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건설안전부	042-620-5625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옥천군 및 영동군	건설안전부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서산시 및 예산군·태안군	건설안전부	041-570-345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 및 단양군·음성군	교육건설부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	건설안전부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건설안전부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건설안전부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평택시·오산시·안성시	건설안전부	031-690-1953

○ 사업 추가 안내자료 확인 위치

공지사항	자료실	지원품목업체 정보 안내
공고문 및 필수 공지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연안수시 보조금 품목 및 보조금 변동사항 확인 가능)	보조금 사업 각종 서식, 지원품목별 제조사 설명자료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보조금 지원 품목별 제조·판매 업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